

## 일본문화심의회 저작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중간보고서 발표

일본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는 2008년 9월19일 향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저작권제도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중간보고서의 내용에는 리버스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통신의 원활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저장 등에 대해서는 권리제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제문제소위원회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촉진법 및 사적복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기기 이용시·통신과정에서의 축적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8년 6월18일에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공표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에서는 ① 검색엔진의 적법화 ② 통신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의 법적위치의 명확화 ③ 연구개발과정에서 저작물이용의 적법화 ④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의 적법화의 4가지 과제에 대해 2008년 까지 제도정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기 위원회에서는 리버스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저작물이용의 적법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다고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 및 번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법성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검토 결과는 상호운용성의 확보 및 장해·취약성의 발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조사·분석에 대해서는 저작권 제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편, 경쟁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 리버스엔지니어링 행위의 전반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서는 권리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용범위 및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신과정의 원활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캐쉬 등의 일시적 저장은 공익성과 권리자에게도 유익한 측면이 있으므로 권리제한을 인정해야 하지만, 입법과정에서는 권리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촉진법에 대해서는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이

용에 관한 제도조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다운로드 불법화”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출처>

- o 三柳英樹, 『リバースエンジニアリング適法化など、文化審小委が中間まとめ』, [internet.watch.impress.co.jp/cda/news/2008/09/19/20909.html](http://internet.watch.impress.co.jp/cda/news/2008/09/19/20909.html), 2008.9.19